

(대)공로상 시행세칙

2014년 11월 06일 제정

제 1 조 (명칭) 본 상은 ‘(대)공로상’ 이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 본 상은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하며, 본 규정은 본 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감사) 본 상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는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.

제 4 조 (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선정) 수상 후보자는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 중 회장단이 추천하고,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최종 선정한다.

제 5 조 (시상) 본 상 시상은 감사패 또는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.

제 6 조 (시상 시기 및 수상자 수) 수상자는 춘계 또는 추계 학술대회 총회에서 년 1 회 시상하며, 수상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단,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칙. 본 규정은 2014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